

# 인니 은행법 개정내용 관련 조사보고

(2014. 8. 13)

자카르타사무소

## I. 인니 의회, 외국인의 인니 은행산업 진출 관련 보다 엄격한 제한을 담은 새로운 은행관련 규제규정 시행예정

- 인니 의회 내 금융 및 은행산업을 담당하는 위원회 11(The House's Commission XI)은 최근 외국인의 인니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발표

### [주요 제한내용]

구분	시행 전	시행 후
외국계 은행의 영업형태	지점개설 가능	법인형태만 가능
소유지분을 제한	99%까지 가능	40%까지 가능

\* 자료 : Jakarta Post(2014. 7. 14일자 기사)

- 인니 내 금융규제당국(OJK: Otoritas Jasa Keuangan) 담당자는 동 법안은 현재 의회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대기중이며 2014. 9. 30일까지는 발효될 것으로 기대
  - 다만, 적용 시 상대국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부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,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

## II. 제한내용의 의미

### 1. 지점형태 영업제한

- 新규제법 발효 이후 모든 외국인의 인니 내 신규 은행산업 투자는 법인형태로만 가능(지점 개설은 불가)하며, 현재 외국계 은행의 지점도 발효 후 5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

- 연간 약 24조 루피아(약 2.7조 원\*)에 달하는 인니 내 외국계 은행 지점의 본점 앞 송금액은 인니의 자본수지 적자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으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

\* '14. 8. 12일자 외환은행 고시 루피아 환율(1원 = 8.85루피아) 적용

- OJK, 이번 규제 시행으로 모든 외국계 은행이 법인으로 전환 또는 설립되면 배당금 등을 제외한 외국계은행의 본·지점 간 외화송금이 없어지면서 외화의 해외송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

## 2. 외국인의 현지은행 소유지분을 상한 제한

- 新규제법 발효 이후 외국인의 현지은행 지분소유는 최대 40%까지로 제한받는 것으로 향후 외국인은 인니 현지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을 의미
- 한편, 인니 현지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제한은 외환 위기 전 49%,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상업은행에 대한 구매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까지 지분의 99%까지 소유 가능
- 다만, 이번 新규제법은 소급적용을 금지할 예정이므로 이미 현지은행의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## Ⅲ. 新규제법에 대한 인니 국내 반응

- 인니 은행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의회의 인니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및 영업형태 제한법률 도입계획에 대해서 2020년 AEC(ASEAN Economic Community)의 발효를 앞두고 대출

규모가 증가하고 수익이 높은 인니 은행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시

□ 특히, Bank Mandiri\*(자산규모 인니 1위 은행)의 Mr. Budi Gunadi Sadikin 은행장은 이번 규제를 인니 현지은행이 해외 진출 시 상대국 정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뜻을 표시

○ 인니 현지은행의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 등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

\* 당행 수은인니금융(P.T. KOEXIM MANDIRI FINANCE)의 합작파트너 은행

○ 이를 위해 법 규정에 현지은행과 외국은행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인니 현지은행에 좀 더 유리한 은행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